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84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관내 도서인 풍도, 육도의 자가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로 소유권 및 운영관리 일체가 이관되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 소가 없음에 따라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제3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2.18. ~ 3. 1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시설(이하 "발전소"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및 한전의 지원으로 안산시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별표1>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발전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시장은 도서민의 자영능력함양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장은 발전소시설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소장은 운영위원장을 지시를 받아 직원 및 발전소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③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발전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관련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발전소를 둔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되며, 위원은 발전소 지역의 주민 및 관계공무원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의 선발기준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주민의 신뢰와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인구수를 객관성있게 감안하여 선출한다.

제5조의2(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운영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2. 운영요원의 정원 및 채용
3.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
4. 유류 및 물품수급계획
5. 예산 및 결산

6.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리운영규정) ①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한 자가발전시설은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도서자가발전시설은 발전소운영위원회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발전소의 실제 전력공급등에 관한 사항
- 3.직원의 채용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
- 4.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발전소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